

8월 경상남도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

순번	홍보자료	도 담당부서
1	경상남도 정보화 마을로 놀러오세요(www.invil.org) (내 아이와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!, 농어산촌 체험 + 피서)	정보통계담당관
2	『안전디딤돌』 앱 설치 도민 홍보	재난대응과
3	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안내	건설지원과
4	상조가입,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!	경제정책과
5	경술국치일 태극기 달기(弔旗) 운동 추진	행정과
6	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	예방대응과

경상남도 정보화 마을로 놀러오세요(www.invil.org)

내 아이와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!, 농어산존 체험 + 피서

(자료제공 :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☎ 055-211-2633)

○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에서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

- 정보화마을에서 농산어촌 체험을, 인근 관광지에서 피서를 -

마을명	전화번호	체험/숙박	주변관광지
거제구조라관광어촌마을	681-2749	유람선관광	구조라해수욕장, 해금강, 바람의언덕
거제어구뉘시마을	634-0440	전마선뉘시/해상콘도	한산도, 청마생가
거창 가남마을	940-3950	고구마캐기, 오미자수확(9~11월) 가마솔밥, 솔뚜껍고기굽기	수포대, 장군봉, 미너봉, 가조온천
거창서변마을	940-3841	블루베리따기, 감자캐기, 사과따기(10~12월)	금원산자연휴양림, 수승대
고성송천참다래마을	070-7767-8622	참다래잼, 비누만들기, 바다생태체험, 참다래따기	고성공룡박물관, 상죽암, 문수암
김해대동화훼마을	330-2707	꽃모종심기	가야테마파크, 산해정, 고분군
김해칠산참외마을	330-2708	참외따기(5월)	김수로왕릉, 김해천문대, 봉하마을
남해지족갯마을	867-1277	석방렴, 쪽잡기, 바지락/민박	죽방렴, 금산보리암, 독일마을
밀양얼음골사과마을	356-5942	사과따기(10~12월)	얼음골, 가지산, 케이블카
밀양평리산대추마을	353-5244	짬뽕공예, 천연염색, 전통음식, 논메기잡기, 생태강체험(뗏목) 캠핑형민박	표충사, 밀양댐, 얼음골
사천고읍단감마을	852-7634	단감피자, 우리밀빵, 나무목걸이, 원두막, 단감따기(10~11월), 가족실, 단체실	삼천포대교, 항공우주박물관
산청지리산대포곶감마을	972-1022	오디따기(6월), 알밤줍기(9월) 곶감만들기(12월), 대포숲야영장, 펜션	한의학박물관, 내원사, 대원사, 남사예담촌
의령보천과채마을	573-8080	감자캐기	충익사, 조씨고가, 이병철생가
의령덕실대봉마을	574-0008	치즈만들기	충익사, 벽화산성, 이병철생가
양산배내골사과마을	365-6262	사과따기(10~11월) 펜션, 체육관, 게이트볼장	배내골계곡, 에덴벨리리조트
진주대암초록마을	746-1864	손두부, 천연염색, 도자기 주말오토캠핑	진주성, 축석루, 진양호
창녕모산양파마을	533-1600		화왕산, 우포늪, 부곡온천
창녕성곡친환경마을	532-0334	떡메치기, 손두부, 천문대체험 단체숙박(50명)	화왕산, 우포늪, 부곡온천
창원고현미더덕마을	272-0011	바다체험, 선상뉘시체험	공룡발자국화석, 무학산
통영학림섬마을	642-1917	펜션, 민박, 마을휴양관	케이블카, 제승당, 동피랑마을
하동삼신녹차마을	880-2767	야생녹차체험	쌍계사, 화개장터
하동악양대봉감마을	880-6109	매실따기(6월), 대봉감따기(11월)	최참판댁, 삼성궁, 평사리공원
하동옥종딸기마을	880-6409	딸기체험(3월)	옥산서원, 약천사
함안월촌마을	582-9977	블루베리따기(6~7월)	와룡정, 마애불
함안칠북과수마을	587-6262	단감따기(10~11월)	장춘사, 광심정
함양음정토봉마을	963-1771	자연휴양림, 한일리조트, 민박	서암정사, 칠선계곡, 오도재, 금대지리
함양화산마을	964-1903		상림공원, 청계서원, 정여창고택
합천아이스딸기마을	933-4336	알밤줍기(9월), 딸기비누	합천호, 영상테마파크, 합천박물관
합천하남양떡메마을	931-7622	손두부만들기, 떡메치기	해인사, 영상테마파크, 합천박물관

『안전디딤돌』 앱 설치 도민 홍보

(자료제공 : 재난안전건설본부 재난대응과 ☎ 055-211-2813)

- (안전디딤돌 ‘앱’ 이란) 태풍, 폭염, 지진 등 다양한 재난정보와 위급상황 시의 국민행동요령, 기상정보, 병원, 약국 등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
- (설치방법) Play 스토어(안드로이드폰)나 APP Store(아이폰)에서 ‘안전디딤돌’ 검색 후 설치하면 무료 다운로드 되며,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‘Emergency Ready App’으로 동일하게 설치함
 - 앱 설치 후, 우측 하단의 환경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수신 지역, 수신알림방법 (진동/소리) 선택가능
- (앱 이용방법)
 - * (환경설정 메뉴설명) 수신알림설정(수신여부 결정), 수신기지역 위치로 설정(위치정보로 현 위치한 지역별로 재난정보 수신), 수신지역 설정(원하는 지역에 대한 재난정보 수신), 수신알림(진동/소리 선택)

		
<p>① 앱 설치 후 클릭하여 실행</p>	<p>②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환경설정 선택</p>	<p>③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설정 (수신지역, 수신음 등 설정)</p>



재난·위급한 상황에 대비해

꼭 필요한 스마트폰 앱 **안전디딤돌!**



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**안전디딤돌** 앱 하나만 설치하면 **다양한 재난안전정보 서비스**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✓ **안전디딤돌** 앱은 위급한 상황에 재난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재난뉴스, 기상정보, 재난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.
- ✓ 비상시 행동요령, 주변의 대피소, 병원, 약국 등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✓ Play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**안전디딤돌**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으세요.



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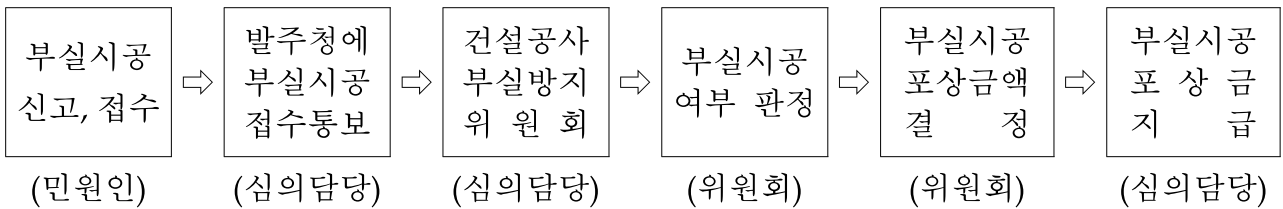
(자료제공 :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 ☎ 055-211-2925)

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부실시공 신고대상

- 경상남도(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)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 발주한 공사 중 경상남도 건설정보(<http://gnci.gyeongnam.go.kr>)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건설공사

○ 처리절차



○ 포상금 지급기준

부실시공 등급	부실벌점	주요내용	포상금 지급기준
1 등급	벌점 3점	설계도서와 다른 기초굴삭 등으로 토사붕괴, 주요 구조부 균열 및 재료분리	500만원 이하
2 등급	벌점 2점	주요 구조부 보수·보강 등을 요하는 경우	300만원 이하
3 등급	벌점 1점	기초굴삭 소홀로 인한 토사붕괴 및 기타 구조부 균열 및 재료분리	100만원 이하
해당 없음	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		없음

○ 신고방법(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)

-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(우편 또는 방문신고) : 055-211-2923~6
- 팩스를 이용한 신고 : 055-211-2919
- 신고서식 :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

상조가입,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!

(자료제공 : 미래산업본부 경제정책과 ☎ 055-211-3416)

최근 도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(일명, 상조회사)의 잇따른 등록취소(폐업)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에 새로운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 전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가입 전 확인사항

- 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 -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여부, 기본 정보 및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등 재무 상태 확인 가능
-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.
 - 환급금액,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, 추가 요금 지급 유무, 장례 용품의 품질 등을 계약서 및 표준 약관 등으로 재차 확인
 - 계약서 및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수령 및 보관

○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지 가능

-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(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, 계약일로부터 3개월) 이내 철회 의사를 밝힌 서면을 거래업체로 발송할 경우,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

○ 피해신고

-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(www.ftc.go.kr) 및 전화(☎ 044-200-4010)
- 도청 경제정책과(☎ 055-211-3416)

경술국치일 태극기 달기(弔旗) 운동 추진

(자료제공 : 행정국 행정과 ☎ 055-211-3518)

「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국기의 게양일)의 개정에 따른 경술국치일(8월 29일) 조기게양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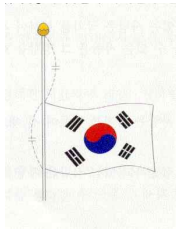
- 게양장소 : 관공서, 각 가정, 건물, 추모행사장 주변 등
- 국기 게양 시간
 - 도내 관공서, 공공기관 등 : 8. 29.(월) 07:00~24:00까지
 - 각 가정, 민간기업·단체 등 : 8. 29.(월) 07:00~18:00까지
- 게양 방법 : 조기(弔旗)로 게양
 -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(깃면의 세로길이)만큼 내려서 게양함
 -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(기관기, 새마을기 등)도 조기로 게양
 - 경술국치일에는 주요 가로변 및 차량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음
 - ※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
 - 악천후인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, 날씨가 갠 후 다시 게양
 -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난간에 태극기 게양 시 안전사고 유의

홍보자료 1

태극기를 달아,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

◇ 오는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.

☆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.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,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와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각 가정에 빠짐없이 조기(弔旗)를 달아 애국정신을 고양합시다.



《 조기(弔旗)는 이렇게 합니다 》

☆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(세로길이)만큼 내려서 합니다.

* 단,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

☆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⇒ 8.29.(월) 07:00~24:00까지

☆ 각 가정, 민간기업·단체 등 ⇒ 8.29.(월) 07:00~18:00까지

☆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경술국치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.

☆ 심한 비바람(악천후)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.

《 가정에서, 태극기는 어디에 답니까? 》

☆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합니다.

*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,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

*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

*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

홍보자료 2

<구내방송 : 각급기관,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>

<8. 26(금) 아침, 저녁 >

8월 29일은 경술국치일로,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.

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,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와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빠짐없이 조기(弔旗)를 달아 애국정신을 고양합시다.

※ 각급 기관(행정기관, 민간기업·단체 등)에서는 8.26(금)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,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8.28(일), 8.29(월)에 구내방송 실시

< 8. 29(월) 아침 >

오늘 8월29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.

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,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와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빠짐없이 조기(弔旗)를 달아 애국정신을 고양합시다.

- ☞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계양하되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
- ☞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계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

(자료제공 : 소방본부 예방대응과 ☎ 055-211-5366)

주택용 소방시설이란?

- 주택용 소방시설 :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
- 설치대상 : 모든 주택
 - ** (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(※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)
- 설치기준
 - 분말소화기 : 세대별, 층별 1대 이상 (기본-3.3kg, ABC급)
 - 단독경보형 감지기 : 구획된 실마다 1개 (거실 1, 부엌 1, 각 방마다 1개씩)
 - ** 단독경보형 감지기(건전지로 작동) -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
- 구입방법 :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,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

관련법령 내용

- 관련법령
 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
 - 「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」 제6조
-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
 -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.

	
<p>소화기 3.3Kg (약 2만원)</p>	<p>단독경보형 감지기 (약 1만원)</p>